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95
------	-----

2016. 3. 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3. 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과학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과학관의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기 위해 건립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17. 2. 개관예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휴관일, 관람료, 관람료 면제 대상 등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실, 세미나실 등 일부시설 대관 및 대관료 납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시설의 대관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음.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개관과 휴관, 관람료, 대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건립 배경

- 1970년도에 건립된 ‘국립과학관’(종로구 창경궁로 소재)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확대·개편되어 대전광역시로 이전한 뒤, 1990년 4월 제반 시설을 이어받아 ‘국립서울과학관’으로 개편되었음.
- 그러나 이 시설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전시공간이 축소(전시공간 약 60%감소, 11,262㎡→4,858㎡) 됨에 따라, 이를 리모델링하여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개명하여 운영(2017년 4월 개관 예정)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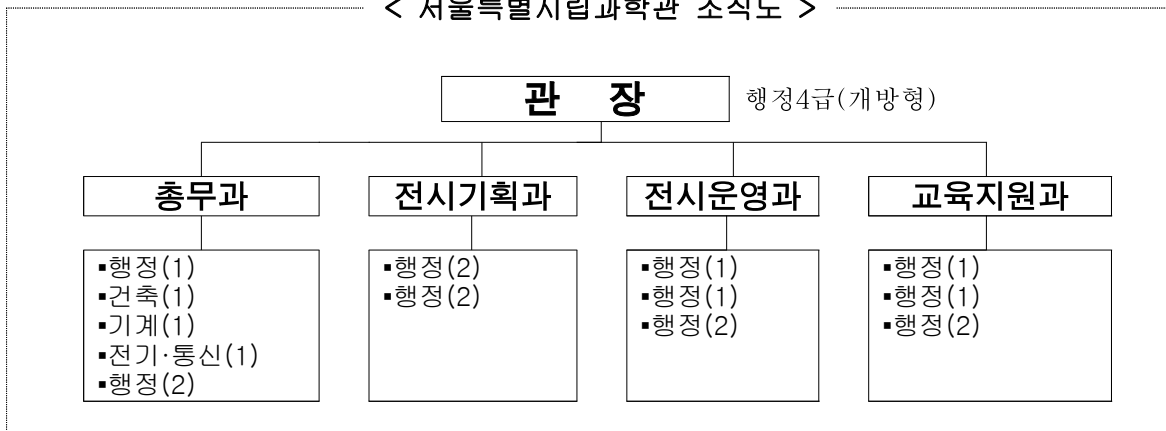
- 이에 정부는 ‘국립서울과학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과학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되 총 사업비 중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은 서울시가 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립과학관”(노원구 하계동 한글비석로 168번지에 소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25,563.6㎡)
- 건립규모 : 연면적 12,330㎡, 지하1층 / 지상3층  
- 전시면적 3,707㎡(상설전시, 기획전시, 야외전시 등)
- 건립기간 : '11. 11 ~ '16. 6 ※ 건축 설계기간 포함
- 총사업비 : 47,076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전시분야 12,420백만원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시립과학관’)의 개략적 조직은 서울시의 4급 사업소로 직영될 계획이며, ‘16년 5월에 건축공사, ‘16년 9월에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17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조직도 >



##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제정안은 과학기술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과학관의 추진사업의 관한 규정과 과학관의 개관과 휴관, 관람료,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제한 대상, 관람 중 금지행위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안 제4조는 시립과학관은 휴관일 제외하고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특정 공휴일(1월 1일·설날·추석)과 매주 월요일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는 나이에 따라 청소년 및 어린이와 어른으로 관람객을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20명 이상인 단체의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서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타 과학관과 비교하면 비교적 관람료가 저렴한 편임(참고자료 2 참조)

<법령상 관람료 기준과 시립과학관의 관람료 비교>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시행령 기준	시립 과학관	시행령기준 (30명)	시립과학관 (20명)	
어른	4,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20 ~ 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	1,000원	1,500원	5,000원	7 ~ 19세
노인	2,000원	무료	1,500원	무료	65세 이상
장애인	2,000원	무료	1,500원	무료	
국가유공자	2,000원	무료	1,500원	무료	
6세 이하	규정없음	무료	규정없음	무료	

- 안 제6조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원수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 당 1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이 제한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과학관 내에서 전시물 손상,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 박물관 운영 조례」 에서도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의 행위 제한 사유와 달리 안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추상적 규정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와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일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고, 대관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관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관의 허가와 대관료 감면의 경우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과학관의 운영 시에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 편의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시립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시립과학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법 규정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대관의 허가와 대관료 감면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행규칙에서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거나, 규정이 불명확성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립과학관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
- 또한, 대관료의 경우 납부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1)에 따라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실상 사용 이후에 파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관료 산정시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95
----------	-----

제출년월일 : 2016년 2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과학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과학관의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방안(안 제4조 ~ 제9조)

- 휴관일 지정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1월 1일
- 관람료 규정 : 어른 2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 단체는 50% 할인
- 관람료 면제 대상, 관람제한 사유, 과학관에서 행위금지 사항 등

### 나. 과학관 시설의 대관(안 제10조 ~ 제15조)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강당 등 일부시설 대관 가능
- 대관료 납부의 근거 및 대관자 준수사항 규정
- 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가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개선권고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10조 (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 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u>일부</u> 시설의 대관을 허가 할 수 있다.	<b>[반영]</b> - 제11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의견 수용 · 과학관 시설 대관 허가조항이 과학관 전체를 대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므로 '과학관 일부시설'로 명확히 규정 필요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14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u>구급실·수유실, 유모차·휠체어대여소</u>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b>[반영]</b> - 제14조제3호 신설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1.26~2015.12.1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시설물(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하계동)에 둔다.

## 제2장 운 영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관람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6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6.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
7.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3장 대관 등

**제10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일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구급실, 수유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위탁운영) ① 과학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서류 및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 략 료 (제5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20명 이상)	
어 른	2,000원	1,0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500원	7세~19세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발생비용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시설7급 이 종 권